



시보는 공문시행에 대체하는 효력을 갖습니다.

시 보

www.namwon.go.kr

선 람	기관·의·장

제 25호 2016. 6. 10(금)

조례

- 남원시 조례 제 1270 호 남원시 아동위원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1
- 남원시 조례 제 1271 호 남원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5
- 남원시 조례 제 1272 호 남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 16

규칙

- 남원시 규칙 제 574호 남원시 이·통·반장 임명 및 위촉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 42

광고

- 남원시 공고 제 2016-776호 백두대간 생태문화 전시관 조성사업 완료에 따른 지적공부 확정시행 공고 65

회 람										
----------------	--	--	--	--	--	--	--	--	--	--

발행 : 남원시 / 편집 : 홍보전산과 ☎(063)620-6032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아동위원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16년 6월 10일

남원시 조례 제 1270 호

남원시 아동위원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남원시 아동위원회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남원시 아동복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남원시 아동복지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아동복지 심의위원회의 기능) ①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남원시 아동복지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1. 법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2. 법 제16조에 따른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 3. 법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 4. 법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 5. 지원 대상 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 6.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아동복지업무 담당국장과 담당과장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되,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 되어야 한다.

- 1. 전라북도 남원교육지원청 또는 지방 고용노동관서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 2. 변호사, 의사, 또는 교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3. 아동단체 또는 시민단체에서 아동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 하였던 사람
- 4. 그 밖에 시장이 아동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를 장기간 불참하거나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된 경우
3. 위원회 활동 중 품위를 손상하거나 임무수행 중 알게 된 아동과 그 관계인의 사생활에 대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
4. 위원이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 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9조(의견청취) 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간사)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아동복지업무담당으로 한다.

제11조(회의록)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다음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12조(비밀누설 금지)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16년 6월 10일

남원시 조례 제 1271 호

남원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원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37조의 규정에 의해”를 “제37조에 따라”로 한다.

제2조 중 “노인복지관(이하”복지관”이라 한다)”을 “노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제8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4조제9호 중 “기타 남원시장(이하”시장””을 “그 밖에 남원시장(이하 “시장””으로 한다.

제5조제1항 본문 중 “되어있는”을 “되어 있는”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시설에 대하여는 일반인들에게도 사용하도록”을 “시설은 일반인들도 사용하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호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에”를 “제1항에도”로,

“사람에 대하여”를 “사람에게”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아니한”을 “않은”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초래할”을 “줄”로 한다.

제6조 제1호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7조 중 “2에 의하되”를 “2로 하되”로, “때”를 “경우에”로 한다.

제8조 제1항 중 “하고자 하는 자는”을 “하려는 사람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자는 별표 3에 의한”을 “사람은 별표 3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때에는”을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가”를 “사람이”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사정에 의하여”를 “사정으로”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9조 제1항 단서 중 “때에는”을 “경우에는”으로, “이하”수탁자”를 “이하 “ 수탁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때에는”을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위탁운영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를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로 한다.

제10조 제1항 중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을 “제9조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할 경우에는”으로, “재위탁시”를 “재 위탁시”로 “선정하고자”를 “선정”으로 한다.

제11조 제1호 중 “제4조의 규정”을 “제4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개·변조하고자”를 “개·변조”로,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시장에게 기부채납하여야”를 “받아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및 조례에 의한”을 “및 조례에 따른”으로 한다.

제1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때에는”을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아니한 때”를 “아니한 경우”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사용한 때”를 “사용한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한 때”를 “한 경우”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인정한 때”를 “인정한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손해에 대하여는 시장은”을 “손해는 시장이”로 한다.

제13조 본문 중 “망실, 훼손, 기타의”를 “잃어버리거나, 훼손, 그 밖의”로, “때에는”을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단,”를 “다만,”로 한다.

제14조 중 “조례 시행에 관하여”를 “조례의 시행에”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 증진에 필요한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노인들의 여가활동과 건강증진 및 소득기회 제공을 도모하기 위하여 「노인복지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해 남원시 노인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 ----- ----- <u>제37조에 따라</u> ----- ----- ----- -----.</p>
<p>제2조(명칭 및 위치) 남원시 <u>노인복지관(이하"복지관"이라 한다)</u>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p>	<p>제2조(명칭 및 위치) ----- <u>노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u>----- -----.</p>
<p>제3조(시설) 복지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둔다.</p> <p>1. ~ 7. (생략)</p> <p>8. <u>기타</u> 노인복지 증진에 필요한 편의시설</p>	<p>제3조(시설) ----- -----.</p> <p>1. ~ 7. (현행과 같음)</p> <p>8. <u>그 밖에</u> ----- -----</p>
<p>제4조(업무) 복지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p> <p>1. ~ 8. (생략)</p> <p>9. <u>기타 남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u>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p>	<p>제4조(업무) ----- -----.</p> <p>1. ~ 8. (현행과 같음)</p> <p>9. <u>그 밖에 남원시장(이하 "시장"</u>----- -----</p>

제5조(이용) ① 복지관의 이용 대상자는 이용하는 날 현재 남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60세 이상의 노인으로 한다. 다만, 이용대상자의 배우자가 60세 미만일 경우에는 이용대상자와 함께 이용할 수 있으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일반인들에게도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② 복지관의 시설규모에 비해 이용 희망자가 많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순서를 제한할 수 있다.

1. ~ 3. (생략)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시설물의 사용 또는 이용을 거부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1. (생략)

2. 신원이 확실하지 아니한 사람 또는 60세 이상의 노인이 아닌 사람

3. (생략)

4. 기타 복지관 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사람

제5조(이용) ① -----

 ----- 되어 있는 -----
 -----.

 ----- 시설은
일반인들도 사용하게 -----
 -----.

② -----

 ----- 호에 따라 -----
 -----.

1. ~ 3.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도 -----

 ----- 사람에게 -----
 -----.

1. (현행과 같음)

2. ----- 않은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
줄 -----

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 3에 의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면제할 수 있다.

③ 시장(또는 수탁자)은 사용료를 납부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 1. 복지관의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 전액
- 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전액
- 3. (생략)

제9조(운영 및 위탁) ① 복지관은 시장이 운영관리 한다. 다만,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이하“수탁자“라 한다)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위탁기간은 3

----- 사람은
별표 3에 따른 -----
-----.
----- 경우에는 -----
-----.

③ -----
----- 사람이 -----

-----.

- 1. ----- 사정으로 -----

- 2. ----- 그 밖에 -----

3. (현행과 같음)
제9조(운영 및 위탁) ① -----
-----.

----- 경우에
는 -----

----- 이하 “수탁자” -----
-----.

② ----- 따른 -----

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복지관을 위탁운영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수탁자의 선정) ①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재위탁시에는 위탁사무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재위탁 여부를 결정하며,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60일 이전까지 선정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11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2. 3. (생략)

4. 수탁자가 복지관내에 새로운 시설물을 신·증축하거나 개

----- . -----
----- 경우에는 -----
----- .

③ ----- 위탁 운영할 경우
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
----- .

제10조(수탁자의 선정) ① 제9조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할 경우에는 -----
----- 재 위탁시-----

----- 선정 -----

----- .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수탁자의 의무) -----

----- .

1. ----- 제4조-----

----- .

2. 3. (현행과 같음)

4. -----
----- 개

· 변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
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시장에게
기부채납하여야 한다.

5.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조례
에 의한 처분 등을 준수하여
야 한다.

제12조(위탁 취소) ① 시장은 수
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될 때에는 위탁을 취소
할 수 있다.

1.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준
수하지 아니한 때
2. 시설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목적 외 사용한 때
3. 수탁자가 위탁능력을 상실
한 때
4. 기타 시장이 사업목적 달성
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② 제1항에 의하여 수탁자가 입
은 손해에 대하여는 시장은 책
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3조(손해배상) 복지관 시설의
수탁자 또는 이용자가 시설 및
비품을 망실, 훼손, 기타의 행위

· 변조 -----
----- 받아야

-----.

5. ----- 및 조례
에 따른 -----
-----.

제12조(위탁 취소) ① -----

----- 경우에는 -----
-----.

1. -----
----- 아니한 경우
2. -----
----- 사용한 경우
3. -----
한 경우
4. 그 밖에 -----
----- 인정한
경우

② ----- 따라 -----
----- 손해는 시장이 -----
-----.

제13조(손해배상) -----

-- 잃어버리거나, 훼손, 그 밖의

시 보

로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원상
 복구를 하거나 손해를 배상 하
 여야 한다. 단, 천재지변으로 인
 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경우에는 -----

 ----- . 다만, -----
 ----- .

제14조(시행규칙) --- 조례의 시
 행에 -----
 ----- .

남원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조례 제정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이 미미하여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여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

제3조(작성대상)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 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16년 6월 10일

남원시 조례 제 1272 호

남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3항 중 “'위원회'”를 ““위원회””로 한다.

제13조 중 “구체적인 사항은”을 “사항은”으로 하고, “따른 범위에서 「지방자치법」”를 “따라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으로 하고,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이율은 발행 당시 위탁 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로 한다.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법」”으로 한다.

제20조 제1항 제2호가목 중 “25퍼센트”를 “15도”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35퍼센트”를 “20도”로 하며, 같은 항 제3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임야의 경우 경사도 조사방법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의 평균경사도의 측정방법에 따른다.

제20조제1항 중 “제2종”을 삭제한다.

제5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외에 해당 지구계획(해당 지구의 토지이용, 기반시설 설치 및 환경오염 방지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계획관리 지역 : 계획관리 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신고 대상이 아닐 것

나. 「악취방지법」에 따른 배출시설이 없을 것

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 가능 여부의 확인 또는 공장설립등의 승인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였을 것.

2. 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 또는 보전관리지역 :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가.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 전에 계획관리 지역에 설치된 기존 공장이

인접한 용도지역의 토지로 확장하여 설치하는 공장일 것

나. 해당 용도지역에 확장하여 설치되는 공장부지의 규모가 3천제곱미터 이하 일 것. 다만, 해당 용도지역 내에 기반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기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환경훼손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5천 제곱미터 까지로 할 수 있다.

제57조 제6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농지법 시행령」 제29조 제7항 제2호에 따른 산지유통시설(시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위한 산지유통시설만 해당한다)

제69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⑥ 위원회의 회의는 매월 1회 정기회의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심의의견이 없을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안건이 있을 경우 수시 개최할 수 있다.
- ⑦ 개발행위허가 관련 심의안건은 심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처리기한에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는 경우의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별표 4, 5, 6, 13, 15, 16, 17, 18, 19, 20, 21, 2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4】 <개정 2008. 7. 1, 2009.11.24., 2011.11.18., 2014.6.27.>

제1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제3호관련)

1. 삭제 <2008. 7. 1>

2. 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및 관람장을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정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 등을 감안하여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제1호 라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 수련시설(같은 표 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하되, 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정한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옥외 철타미 설치된 골프연습장을 제외한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인쇄업, 기록매체복제업, 봉제업(의류편조업을 포함한다), 컴퓨터 및 주변기기제조업, 컴퓨터관련 전자제품조립업, 두부제조업, 세탁업의 공장 및 지식산업센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항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3)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항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다만, 동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 해당하는 것

(5)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6) 「소음·진동관리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인 것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가스 취급소·판매소, 도료류 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주차장 및 세차장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떡 제조업 및 빵제조업(이에 딸린 과자 제조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공장으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것

(1)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일 것

(2) 「악취방지법」에 따른 악취배출시설인 경우에는 악취방지시설 등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을 것

(3) 차목 (1)에서 (6)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다만 도시계획조례로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및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설치 허가·신고 대상 시설의 건축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건축제한시설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4)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근의 주거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이 적다고 인정하였을 것

【별표 5】 <개정 2008.7.1, 2009.11.24., 2011.11.18., 2014.6.27., 2015. 3 . 31. >

제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제4호관련)

1.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축물은 경관관리 등을 위하여 해당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하는 층 수에 따른다)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2. 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축물은 경관관리 등을 위하여 해당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하는 층수에 따른다)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10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정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 회복 등을 감안하여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제1호 마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 수련시설(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하되, 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정한다)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금융업소·사무소 및 같은 호 가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 자. 별표 4 제2호 차목의 공장 및 러목의 공장
 -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가스 취급소·판매소, 도료류 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과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같은 호 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주차장 및 세차장
-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같은 호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별표 6】 <개정 2008. 7. 1, 2009.11.24., 2014.6.27., 2015. 3.31.>

제3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제5호관련)

1. 삭제 <2008. 7. 1>

2. 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10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정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 등을 감안하여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하되, 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정한다)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하인 것
- 자. 별표 4 제2호 차목의 공장 및 리목의 공장
-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가스 취급소·판매소, 도료류 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같은 호 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주차장 및 세차장
-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같은 호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별표 13】 <개정 2008. 7. 1, 2009.11.24., 2011.11.18., 2014.6.27.>

일반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제12관련)

1. 삭제 <2008. 7. 1>

2. 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라목에 해당하는 것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한다)
-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일반업무시설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는 지원시설에 한정한다)
-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15】 <개정 2008. 7. 1, 2009.11.24., 2014.6.27.>

보전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제14호관련)

1. 삭제 <2008. 7. 1>

2. 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라목에 해당하는 것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중학교·고등학교
-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같은 호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16】 <개정 2008. 7. 1, 2009.11.24., 2011.11.18., 2014.6.27., 2015. 3.31.>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제15호관련)

—

1. 삭제 <2008. 7. 1>

2. 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단란주점을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 하는 것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정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중학교·고등학교·교육원(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로 한정한다)·직업훈련소 및 연구소(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연구소로 한정한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운동장을 제외한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식품공장·제1차산업생산품 가공공장 및 「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2호마목의 첨단업종의 공장(이하 “첨단업종의 공장”이라 한다)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항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1종사업장 내지 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3)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항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다만, 동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 해당하는 것

(5)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 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으로 쓰는 것은 제외한다)

-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를 제외한다)
-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같은 호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것
-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같은 호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
-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17】 <개정 2008. 7. 1, 2009.11.24, 2010.6.28., 2011.11.18., 2014.6.27.>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제16호관련)

1. 삭제 <2008. 7. 1>

2. 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아목·자목 및 러목(안마시술소만 해당한다)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

(2)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의 따른 농수산물직판장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농업인·어업인 및 생산자단체,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후계농어업경영인,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전업농어업인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것에 한정한다)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중소기업공동 판매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직업훈련소 및 학원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첨단업종의 공장, 지식산업센터,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으로서 별표 16 제2호아목(1) 내지 (5)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 및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해당 특별시·광역시·시 및 군 지역으로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공장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으로 쓰는 것은 제외한다) 및 같은 호 라목의 집배송시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별표 18】 <개정 2008. 7. 1, 2009.11.24., 2014.6.27.>

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제17호관련)

- 1. 삭제 <2008. 7. 1>
- 2. 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을 제외한다)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자목, 너목 및 더목은 제외한다)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중학교·고등학교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 사. 삭제<2008. 7. 1>
 -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만 해당한다)
 -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같은 호 가목 및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19】 <개정 2008. 7. 1., 2009.11.24., 2011.11.18., 2014.6.27.>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제18호관련)

1. 삭제 <2008. 7. 1>
2. 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가목, 나목, 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만 해당한다) 및 아목은 제외한다]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자목, 너목 및 더목은 제외한다)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정한다)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중학교·고등학교 및 교육원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나목 및 다목에도 불구하고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등이 같은 법 제2종제5호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지구 내에서 교육시설과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을 함께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한정한다.]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한다.)
 -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같은 영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를 포함한다) 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항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1종사업장 내지 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 (3)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항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다만, 동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 해당하는 것

-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같은 호 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같은 호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것
-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20】 <개정 2008. 7. 1, 2009.11.24., 2011.11.18., 2014.6.27., 2015. 3.31.>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31조제19호관련)

1. 삭제 <2008. 7. 1>

2.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4층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한 층수를 초과하는 모든 건축물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

다. 삭제<2015. .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외의 지역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되는 경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 20 제1호 자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2)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에 설치되는 것으로서 부지면적(둘 이상의 공장을 함께 건축하거나 기존 공장부지에 접하여 건축하는 경우와 둘 이상의 부지가 너비 8미터 미만의 도로에 서로 접하는 경우에는 그 면적의 합계를 말한다)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별표 21】 <개정 2008.7.1., 2014.6.27.>

농림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제20호관련)

1. 삭제 <2008. 7. 1>

2. 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나목, 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만 해당한다) 및 아목은 제외한다]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자목, 너목, 더목 및 러목(안마시술소만 해당한다)은 제외한다]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마목에 해당하는 것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한다)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같은 호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 비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5항제3호에 따라 농림지역 중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 또는 초지인 경우에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하여는 각각 「농지법」, 「산지관리법」 또는 「초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별표 23】 <개정 2008. 7. 1, 2009.11.24, 2010.6.28., 2011.2.11., 2014.6.27.>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제22호관련)

1. 삭제 <2008. 7. 1>
2. 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 안에서 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아목·자목 및 러목(안마시술소만 해당한다)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1)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
 - (2)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의 따른 농수산물직판장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어업인,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후계농어업경영인,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전업농어업인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것에 한정한다)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요양병원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 시설
 -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한다.)
 -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
 -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직접 가공하여 음식물을 생산하는 것으로 한정한다)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 및 첨단업종의 공장으로서 별표 19 제2호자목(1) 내지 (4)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4조(추진기구 및 공청회 등) ① · ② (생략) ③ 제2항에 따른 자문으로 도시기본계획 승인요청을 위한 시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을 갈음할 수 없다.</p>	<p>제4조(추진기구 및 공청회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위원회”----- -----.</p>
<p>제13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자율)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자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범위에서 「지방자치법」 제124조에 따라 지방채 발행 계획을 수립할 때에 시장이 따로 정한다.</p>	<p>제13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자율) ----- ----- ---- <u>사항은</u> ----- ----- <u>따라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으로 하고,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이율은 발행 당시 위탁 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로 한다.</u> <u>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124조에 따라 지방채 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 시장이 따로 정한다.</u></p>
<p>제20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영 제56조의 별표 1의2제1호가목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정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지구단위계획이 수립</p>	<p>제20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 ----- ----- ----- -----.</p>

된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1. (생략)
- 2. 개발행위허가 대상토지의 경사도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토지(조성 후의 경사도를 포함한다)

가. 도시지역 : 경사도 25퍼센트 미만인 토지

나. 비도시지역 : 경사도 35퍼센트 미만인 토지

- 3. 제2호의 경사도 산정은 별표 27의 경사도조사방법을 따른다. <단서 신설>

4. (생략)

② (생략)

제21조(도로 등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생략)

- 1. 신청지역에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 시설과 이어지는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상수도에 대신하여 「먹는물 관

-----.

- 1. (현행과 같음)
- 2. -----

가. ----- 15도 -----

나. ----- 20도 -----

- 3. -----

--. 단, 임야의 경우 경사도 조사방법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의 평균경사도의 측정방법에 따른다.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21조(도로 등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현행과 같음)

- 1.-----

하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신고 대상이 아닐 것

나. 「악취방지법」에 따른 배출시설이 없을 것

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 가능 여부의 확인 또는 공장설립 등의 승인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였을 것.

2. 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 또는 보전관리지역 :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가.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 전에 계획관리지역에 설치된 기존 공장이 인접한

제57조(용도지역 안에서 의 건폐율) ① ~ ⑤ (생략)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4조제7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1. 2. (생략)

<신설>

⑦ (생략)

용도지역의 토지로 확장하여 설치하는 공장일 것

나. 해당 용도지역에 확장하여 설치되는 공장부지의 규모가 3천제곱미터 이하일 것.
다만, 해당 용도지역 내에 기반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기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환경훼손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5천제곱미터까지로 할 수 있다.

제57조(용도지역 안에서 의 건폐율)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

-----.

1. 2. (현행과 같음)

3.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2호에 따른 산지유통시설(시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위한 산지유통시설만 해당한다)

⑦ (현행과 같음)

제69조(회의운영) ① ~ ⑤ (생략)

<신 설>

<신 설>

제69조(회의운영)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위원회의 회의는 매월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심의의견이 없을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안건이 있을 경우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⑦ 개발행위허가 관련 심의안건은 심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처리기한에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는 경우의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남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조례 제정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이 미미하여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여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

제3조(작성대상)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 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남원시 조례·규칙심의회회의 심의를 거친 남원시 이·통·반장 임명 및 위촉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를 이에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16년 6월 10일

남원시 규칙 제 574 호

남원시 이·통·반장 임명 및 위촉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

남원시 이·통·반장 임명 및 위촉에 관한 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남원시 이·통·반장 임명 및 복무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1조 및 「남원시 리·통·반 설치 조례」 제4조에 따라 이·통·반장의 임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격) 이·통·반장은 공고일 현재 해당 이·통에 1년 이상 실제 거주하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신설 리·통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0세 이상인 주민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통·반장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 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임기만료 전 제9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임된 지 3년이 되
 지 아니한 사람

제3조(마을총회를 통한 임명) ① 이·통장은 마을총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을 읍·
 면·동장이 임명한다.

② 읍·면·동장은 이·통장 임기만료 30일 전 또는 사임(해임) 후 10일 이내
 에 이·통장 선출절차 등을 별지 제1호 서식에 준하여 공고하고, 마을총회 소
 집권자 또는 재임 중인 이·통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공고는 게시판, 홈
 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7일 이상 하여야 한다.

③ 이·통장이 되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지원서 및 관련 서류를 읍·
 면·동 사무소에 제출하여 후보로 등록한다.

④ 읍·면·동장은 마을총회 전까지 접수 결과와 총회의 일시·장소 등을 별지
 제3호 서식에 준하여 공고하고 마을총회 소집권자 또는 재임 중인 이·통장에
 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이·통장의 임명에 관하여 마을 규약에 달리 정함이 없다면 마을 총회는 총
 회 성원의 과반수 참석으로 성립하고, 참석자의 다수결로 결정하며, 한 세대별
 로 하나의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읍·면·동장은 현지 실정에
 맞게 이를 조정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총회 전에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⑥ 마을총회 소집권자 또는 재임 중인 이·통장은 마을총회가 끝난 후, 별지 제
 4호 서식의 추천서와 관련 서류를 읍·면·동장에게 제출한다.

⑦ 읍·면·동장은 추천을 받은 사람을 이·통장에 임명하고 별지 제5호 서식

에 준하여 그 결과를 공고한다.

⑧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입주자 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나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등 자치 기구에 추천절차를 위임할 수 있다.

제4조(면접을 통한 임명) ① 제3조에도 불구하고, 읍·면·동장은 마을총회를 대신하여 면접심사위원회의 면접심사를 통해 이·통장을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뜻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② 면접심사를 통한 임명의 경우에 제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후보로 등록할 때에 해당 이·통 세대수의 10분의 1에서 5분의 1까지, 읍·면·동장이 정하는 범위의 별지 제6호 서식의 추천자 서명부와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면접심사는 3명 이상의 자생단체 임원, 기관장 등으로 구성된 면접심사위원회에서 주관하며, 면접심사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읍·면·동장이 위촉한다.

④ 면접심사위원회는 별표 1의 면접 기준표에 따라 심사하고, 산술평균하여 결과를 산출한다. 단, 면접 기준표는 읍·면·동 사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⑤ 면접심사위원회는 면접심사가 끝난 후, 면접 기준표를 읍·면·동장에게 제출한다. 면접심사위원은 면접 기준표를 제출하면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⑥ 읍·면·동장은 면접 기준표와 별표 2의 심사 기준표에 따라 이·통장 임명 예정자를 결정하고 별지 제5호 서식에 준하여 그 결과를 공고한다.

제5조(직권에 의한 임명) 제3조와 제4조에도 불구하고, 책임자가 없거나 접수자가 없는 경우에 읍·면·동장은 직권으로 이·통장 자격을 갖춘 주민 중에서 책임자를 위촉하여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경과, 사유, 결과를 임명전 미리 공고해야 한다.

제6조(이의절차) ① 제4조와 제5조에 따른 임명 결과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임명 예정 공고 이후 임명 전까지 별지 제7호 서식의 이의 신청서를 읍·면·동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읍·면·동장은 이의 신청서를 성실히 검토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회신해야 한다. 이의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읍·면·동장은 임명절차를 다시 개시한다.

제7조(반장의 임명) 반장은 이·통장의 추천을 받아 읍·면·동장이 임명한다.

제8조(임기) ① 이·통·반장의 정기 임명일은 1월 1일로 한다.

② 이·통·반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③ 읍·면·동장은 이·통·반장이 리·통의 신설, 임기 중 해임, 결원 등의 사유로 정기 임명일 이외의 일자에 새로 임명될 경우, 미리 공고하여 그 임기를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9조(해임) 읍·면·동장은 이·통·반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직권으로 해임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그 사유와 취지를 해당 리·통의 주민들에게 알려야 한다.

1. 신체, 정신상의 이상으로 이·통·반장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형사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3. 품위 손상, 복무사항 위배, 금지사항 위배, 권한 남용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해당 리·통·반의 주민등록상 세대주의 3분의 2이상이 연서하여 이·통장의 해임을 읍·면·동장에게 요청하였을 경우
5. 해당 리·통·반 이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출 또는 이사한 경우

6. 리·통·반이 통폐합 된 경우

제10조(임명장 교부 등) ① 읍·면·동장은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이·통장 임명장을 교부하고,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임면에 관한 사항을 대장 또는 전산시스템에 입력, 관리한다.

② 읍·면·동장은 재임 이·통장의 신청이 있는 경우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재직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발급사항을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대장 또는 전산시스템에 입력, 관리한다.

제11조(보고) 읍·면·동장은 이·통장의 임명에 관한 사항을 1주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임무) 이·통·반장은 해당구역에서 읍·면·동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전달 반영
2. 리·통·반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자율적 업무 처리
3. 지역 주민 간 화합 단결과 이해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 주민의 편익증진과 봉사

제13조(복무) ① 이·통·반장은 법규를 준수하고 임무를 성실히 하며 주민의 참된 봉사자로서 리·통·반의 발전을 선도하여야 한다.

② 이·통·반장은 제11조의 임무를 수행할 때 읍·면·동장의 직무상 지시에 협조하여야 하며 임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③ 이·통·반장은 질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장기간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읍·면·동장에게 보고하고 그 직무의 대행자를 미리 지정받아야 한다.

제14조(단체행동 금지) 이·통·반장은 공무가 아닌 모든 집단적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선거 개입 금지) 이·통·반장은 공직선거와 공공단체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근무) ① 이·통·반장의 정위치는 이·통·반장 주소지로 한다.

② 이·통장은 읍·면·동에서 소집하는 이·통장 회의에 참석하여야 한다.

③ 정기 이·통장 회의는 매월 2회로 하되, 회의일자는 읍·면·동 실정에 맞게 정하여야 한다.

④ 읍·면·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통장 회의를 수시로 소집할 수 있고 이·통장은 반장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⑤ 이·통·반장은 언제든지 소재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남원시 관할구역 밖으로 장기간 출타할 때에는 읍·면·동장에게 사전에 신고하여야 한다.

⑥ 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반 내에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주부가 참석하는 반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7조(사무인계인수) 이·통장이 교체된 경우 전임자는 10일 이내에 별지 서식의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리·통 담당공무원 입회하에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3부를 작성하여 읍·면·동장, 인수자 및 인계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임명된 이·통장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정기 임명일과 다른 일자에 임기가 끝난 경우에는 도래하는 정기 임명일 전일까지로 연장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년도 남원시 ○○읍·면·동 이·통장 임명계획 공고

남원시 이·통·반장 임명 및 복무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남원시 ○○읍·면·동 이·통장 임명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년 월 일

남 원 시 ○○읍·

면·동장

1. 임명예정인원: 0명

해당 통	세대수	관할지역	임명방법
제○통			마을총회
제○통			면접심사

2. 임명방법

- 가. 마을총회를 통해 추천을 받은 사람을 읍·면·동장이 임명.
- 나. 면접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읍·면·동장이 임명
- 다. 접수자가 없거나 적임자가 없는 경우, 읍·면·동장이 직권으로 임명

3. 임명자격

공고일 현재 해당 통에 1년 이상 실제 거주하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신설 리·통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0세 이상인 주민

4. 결격사유

- 가. 피성년 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다.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라. 임기 만료전 「남원시 이·통·반장 임명 및 복무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의해 해임된 지 3년이 되지 아니한 사람

5. 지원서 교부 및 접수

- 가. 교부접수기간 : (공고기간과 동일하게)
- 나. 교부접수처 : ○○동(담당) 또는 홈페이지
- 다.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지원서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 제출
- 라. 제출서류

- (1) 지원서1통 : 교부처에서 교부하는 소정양식 (붙임 양식 참조)
- (2) 사진1매 : 응시원서 제출전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상반신 사진 (3.5cm× 4.5cm) 1매를 응시원서 소정란에 붙임
- (3) 주민등록표 등본
- (4) 자원봉사경력 소명 서류 (해당자)
- (5) 상훈 관련 소명 서류 (해당자)

6. 세부일정

- 가. 서류접수 결과공고 :
- 나. 면접심사 :
※면접일정 및 장소는 개별 통보)
- 다. 임명결과 공고 :
※ 홈페이지, 각종게시판에 공개 및 개별통보
- 라. 임명예정일 : 대상자에게 개별통보
※ 서류전형 및 면접 등 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개별 통지함.

7. 선발 기준

- 가. 과반수 이상 참석한 마을총회에서 다수 득표자
- 나. 면접심사에서 다득점자
※적임자나 접수자가 없는 경우, 읍면동장이 직권 임명한 자
- 다. 기타 결격사유가 없는 자

8. 기타사항

- 가. 지원서상 기재착오 또는 누락, 자격 미비자, 거주지제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나. 위의 공고사항 중 선발예정인원, 응시자격, 시행일정 등은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다.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 담당 (☎620-0000)으로 문의 바랍니다.

[별지 제2호 서식](앞면)

()이·통장 지원서					사 진 (3×4cm) 6개월내
성 명	(한글) (한자)	주민등록 번 호			
성 별	남 / 여	직업			
도로명 주 소					
E-mail		전화 번호		휴대폰	
가 족 사 항	성 명	관계	연령	직 업	비 고
학 력	기 간	학 교 명(중학교 이상)		전공(학위)	
	~				
	~				
경 력	기 간	근 무 처(부 서)	직위(급)	업 무 내 용	
	~				
	~				
자 격 사 항	취득년월일	자 격 · 면 허 증		시 행 처	
	. . .				
	. . .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align-items: center;"> 년 월 일 </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align-items: center;"> 신청인 (인 또는 서명) </div> <div style="margin-top: 10px;"> ()읍·면·동장 귀하 </div>					

[별지 제2호 서식](뒷면)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3자 제공 동의서

남원시에서는 단체상해보험 가입·보험금지급 신청·업무상 비상연락을 위하여 이·통장님들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 · 이용 · 제3자 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사항을 읽은 후 동의 여부를 기재하고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개인정보 이용기간 및 보유기간
성명, 생년월일, 사진, 주소, 연락처	- 임명절차 진행 - 본인식별 - 업무상 비상연락	이·통장 재직기간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위 제공사항은 임명절차 진행, 본인식별, 업무상 비상연락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거부하실 경우 이·통장 취임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

개인정보를 제공받는자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보험자(보험회사)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 단체상해보험 가입 계약 - 단체상해보험 보험금 지급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위 제공사항은 단체상해보험가입과 보험금 지급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거부하실 경우 단체상해보험가입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본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3자 제공 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 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남원시 읍·면·동 이·통장(후보)

(인 또는 서명)

[별지 제3호 서식]

남원시 ○○읍·면·동 이·통장 후보 접수결과 공고

「남원시 이·통·반장 임명 및 복무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남원시 ○○읍·면·동 ○○이·통장 후보 접수 결과와 총회 관련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년 월 일

○ ○ 읍면동장

통·리	선출방법	성명	성별	주소	비 고
제0통	마을총회 (일시/장소)				
제0통	면접심사 (일시/장소)				

[별지 제4호 서식]

남원시 00읍·면·동 00리·통 이·통장 추천서

총회일시 : . . . (: ~ :)

총회장소 :

참석인원 : 명

이·통장 피추천자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연락처		직업	

위 사람을 마을총회를 거쳐 00읍·면·동 00이·통장으로
추천합니다.

- 붙임 1. 회의록 1부.
2. 회의참석자 명단 1부.

년 월 일

00읍·면·동 00리·통 주민 일동

00읍면동장 귀하

회 의 록

일 시	. .	장 소	작성자
발언자	발 언 내 용		

마을총회 참석자 명부

연번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1			
2			
3			
4			
5			

[별지 제5호 서식]

남원시 ○○읍·면·동 이·통장 임명(예정) 공고

「남원시 이·통·반장 임명 및 복무에 관한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남원시 ○○읍·면·동 ○○이·통장이 임명(예정)됨을 공고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 . .까지 읍·면·동사무소(담당 ○○○, 전화번호 ○○○○)에 동 규칙 별지 제7호 서식의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 읍·면·동장

통·리	성 명	주소	선출방법	임명(예정)일	임기	비고
			마을총회		~	연임
			면접심사		~	신규
			직권임명		~	

[별지 제8호 서식]

제 호

임 명 장

성 명 :

주 소 :

생년월일 :

임 기 : 년 월 일 ~ 년 월 일

귀하를 「남원시 이·통·반장 임명 및 복무에 관한 규칙」에 따라 00읍
·면·동 00이·통장으로 임명합니다.

20 년 월 일

남원시 00읍·면·동장 (직인)

[별지 제10호 서식]

재 직 증 명 서

발급번호 ○○읍·면·동 - 호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 . .
	주 소			
재직사항	소 속			
	직 위			
	재직기간	20 년 월 일 ~ 증명일 현재		
용 도				

위와 같이 재직하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20 년 월 일

○○읍·면·동장

발급자	직급	성명	(인)	연락처	○○○-○○○-○○○○
-----	----	----	-----	-----	--------------

[별지 제12호 서식]

사무인계인수서

1. 부채·물품 목록

부 채·물 품	단 위	수 량	비 고

2. 현물, 현금 및 예금 현 재고조서

종 별	현 품	현 금	예 금	비 고

3. 미결사항

위와 같이 ○○리·통의 사무를 인계·인수합니다.

 년 월 일

인계자(전임자)	이·통장	①
인수자(신임자)	이·통장	①
입회자(공무원)	직 성명	①

[별표 1]

이·통장 후보자 면접기준표

□ 면접대상자 (읍·면·동 리·통)

성 명		성 별		생년월일		연락처	자택)
주 소						휴대폰)	

□ 면접기준

심 사 항 목 (비 율)	배점기준	배점	득점	비 고
1. 시정 관심도 (30%)	우수	30		· 시 및 읍면동의 현황 인지도 · 시정 주요 정책 인지도
	보통	20		
	미흡	10		
2. 리·통장 능력 (10%)	우수	10		· 지원동기, 적극성, · 이·통장 임무 숙지 여부 · 주민 파악 정도 · 정보통신 활용 능력
	보통	5		
	미흡	3		
3. 개인 태도 관련 (10%)	우수	10		· 성품, 건강상태, 호감도 등 · 봉사 정신 · 인권 감수성 · 성평등 태도 및 관점
	보통	5		
	미흡	3		
총 계		50		

년 월 일

면접위원 성명

(인)

[별표 2]

이·통장 후보자 심사기준표

□ 심사대상자(읍·면·동 리·통)

성 명		성 별		생년월일		연락처	자택)
주 소							휴대폰)

□ 심사기준 (기준일 : 공고일 현재)

심 사 항 목 (비 율)	배점기준	배점	특점	비 고 (인정조건 등)
1. 해당 통리 관할 구역 내 주민등록상 거주기 간 (15%)	8년 이상	15		· 누적합산 (주민등록 기준)
	6년 이상 ~ 8년 미만	13		
	4년 이상 ~ 6년 미만	11		
	2년 이상 ~ 4년 미만	9		
	1년 이상 ~ 2년 미만	7		
2. 최근 5년간 사회봉사활동 경력 (15%) (통리장 경력 제외)	75시간 이상	15		·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 보조금을 지원 받는 단 체 · 개별 법령에 따라 설립신고된 시설 및 단체에 서 인정하는 자원봉사자 ※ 경력은 본인에게 유리한 1개만 인정
	50시간 이상 ~ 75시간 미만	13		
	30시간 이상 ~ 50시간 미만	11		
	30시간 미만	9		
3. 리·통장 활동 집중도 (10%)	겸직 없음	10		
	자유·자영업	8		
	기타	6		
4. 최근 5년간 행정 기관 상훈 (10%)	장관 이상	10		· 소명 자료 제시 (본인에게 유리한 1개만 인정) ※ 공공기관 상훈에 한함
	도 단위	8		
	시 단위 이하	6		
	포상경력 무	4		
5. 면접 (50%)		50		
총 계		100		
확 인 자(읍·면·동 장)				(인)

남원시 공고 제2016- 776호

토지개발사업 완료에 따른 지적공부확정 시행 공고

전라북도 남원시 운봉읍 주촌리 일원에서 시행된 『백두대간 생태문화 전시관 조성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5조 및 지적업무처리규정 제58조 규정에 의거 종전의 지적공부를 폐쇄하고 새로이 작성한 지적공부를 아래와 같이 확정·시행함을 공고합니다.

2016. 6. 10.

남 원 시 장

- 1. 사 업 명 : 백두대간 생태문화 전시관 조성사업
- 2. 시 행 일 : 2016. 06. 08
- 3. 공 고 기 간 : 2016. 06. 10 ~ 06. 19(10일간)
- 4. 사업시행자 : 남원시장
- 5. 지적공부 폐쇄 및 확정 내역

종전토지 지적공부(폐쇄)			확정토지 지적공부(시행)			비 고
소 재 지	필 지	면 적(m ²)	소 재 지	필 지	면 적(m ²)	
운봉읍 주촌리	46	32,549	운봉읍 주촌리	2	62,658.1	지번별조서 참고

- 6. 열람 및 문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청 민원과 지적계 (☎063-620-612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백두대간 생태문화 전시관 종전 조서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등록번호
운봉읍 주촌리	592-2	하천	59	남원시	3515
운봉읍 주촌리	593	답	413	남원시	3515
운봉읍 주촌리	594	답	2922	남원시	3515
운봉읍 주촌리	595-6	체육용지	1202	남원시	3515
운봉읍 주촌리	595-38	도로	3	남원시	3515
운봉읍 주촌리	595-56	체육용지	2	남원시	435
운봉읍 주촌리	635	전	129	남원시	3515
운봉읍 주촌리	636	전	2575	남원시	3515
운봉읍 주촌리	637	전	583	남원시	3515
운봉읍 주촌리	637-1	전	1065	남원시	3515
운봉읍 주촌리	637-3	전	1534	남원시	3515
운봉읍 주촌리	638-2	전	31	남원시	3515
운봉읍 주촌리	640-3	전	145	남원시	3515
운봉읍 주촌리	640-4	전	107	남원시	3515
운봉읍 주촌리	640-5	전	372	남원시	3515
운봉읍 주촌리	693-2	전	43	남원시	3515
운봉읍 주촌리	694	전	1224	남원시	3515

운봉읍 주촌리	851-10	대	2798	남원시	3515
운봉읍 주촌리	851-15	구거	4	남원시	229
운봉읍 주촌리	851-16	전	74	남원시	3515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등록번호
운봉읍 주촌리	851-17	전	127	남원시	3515
운봉읍 주촌리	851-18	대	2181	남원시	3515
운봉읍 주촌리	851-19	구거	81	남원시	229
운봉읍 주촌리	산 54-31	임야	86	남원시	3515
운봉읍 주촌리	산 54-37	도로	281	남원시	3515
운봉읍 주촌리	산 55-11	임야	108	남원시	3515
운봉읍 주촌리	산 55-12	임야	5685	남원시	3515
운봉읍 주촌리	산 55-13	도로	62	남원시	3515

백두대간 생태문화 전시관 확정 조서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등록번호
운봉읍 주촌리	528	대	24594.6	남원시	3515
운봉읍 주촌리	635	대	8063.5	남원시	3515